양식[A-01]

□ 일반휴학 신청서

※휴학만료일			
학과(부)		학 번	
성 명		이메일	
본인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SNS / ID	SNS: (wechat / zalo / kakao) / ID:		
신청사유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일반휴학 신청	학과(부), 학번, 성명, 전화번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신청일 : 년 월 일

신청인 : ㊞

※유의사항!!

1. 1회 휴학 시 휴학 기간은 1년으로 휴학을 연장하고 싶은 학생은 새로 휴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휴학 연장됩니다. 제출 안 할 시에는 미복학제적 처리됨.
2. 학교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핸드폰번호 및 이메일주소 등을 학생정보시스템에서 갱신 및 관리(잘못된 핸드폰 번호 또는 이메일 주소 기재로 인하여 연락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3. 휴학만료 전 휴학연장 또는 복학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되므로 유의할 것.
4. 외국인 유학생은 휴학신청일로부터 비자가 만료되므로 외국인등록증의 체류 잔여일과 상관없이 30일 이내로 본국으로 돌아가야 함.(한국에 계속 체류시 불법체류자로 분류 되어 벌금 및 한국입국에 불이익 있을 수 있음.)
5.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휴학신청서를 국제교류처 사무실에 방문제출하거나 국제교류처 이메일로 신청해야 휴학 처리 됨.